



Newsletter



Korea Tax Updates

대한민국 대법원, 론스타 사건 최종 판결 – 1심 및 2심 판결 뒤집고 대한민국 승소 판결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약 8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음.

사건 개요

론스타의 중간지주회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내 투자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약 1,600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국세청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해당 중간지주회사가 아니라 상위 투자자라며, 이들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약 1,70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 결정하였음. 다만, 기 납부된 1,600억 원의 원천징수세액이 있었기에 국세청은 약 1,700억 원의 법인세에서 기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여 세액만을 부과하였음.

이에 대해 2017년 대법원은 상위 투자자들에게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국세청의 1,700억 원 세금 부과를 취소하였음. 하지만 국세청은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1,600억 원을 제외한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한 약 200억 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배당 지급 법인만이 환급 청구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음. 결과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 (이하 “납세의무자”)는 이미 결정청구 기한이 도과한 상태에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며, 정부가 부당하게 취득한 1,600억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음.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정사업장(PE)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이 사후에 취소된 경우, 그 과세 처분을 상계 처리하는데 사용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선납세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점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 의무가 과세 처분의 취소로 인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본 사건에서는 론스타 및 상위 투자자들)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별도의 환급 청구권 양도 없이도 직접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가 쟁점임.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을 이전 받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음.

부가가치세 월별 거래명세 제출의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까지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 75 조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PG), 전자금융업자 그리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이하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월별 거래명세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해당 월별 거래명세는 각 분기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 일까지, 거래당사자 정보, 거래 건수, 거래금액 등 거래 관련 기초정보를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취지는 중개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실제 서비스 공급자의 매출 자료를 검증하고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2025 년 3 월 개정 이전까지는 해외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월별 거래명세 제출 의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2025 년 7 월 1 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 75 조는 해당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도 거래명세 제출 의무의 대상임을 명시하였음. 또한, 중개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 중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 거래의 범위에서 해외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음. 한편, 제출의무자가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Newly Issued Tax Interpretations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의 모든 배당가능이익이 사업연도 말에 실제로 배당되어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CFC 규정) 규정에 따르면, i) 한국 거주자가 해당 외국 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상 (지분수 또는 가치 기준)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은 자회사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 ii) 외국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최근 3개년 평균 실효세율이 대한민국의 최고 명목 법인세율의 7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는 외국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미지급 배당가능이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한편, 2022년 12월 31일, 한국 세법은 한국 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의 의결권 또는 지분가치 기준으로 직접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새로운 이중과세 조정규정을 도입함 (이하 "95%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또한, 본 규정에 따르면 CFC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소득 및 해당 간주배당의 실제 지급 시에는 95%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한편, 최근 유권해석(서면-2024-법규국조-3981)에 따르면 외국 자회사(특정외국법인)가 매 사업연도 말까지 전체 배당가능이익을 실제로 배당함으로써 CFC 규정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없더라도, 한국 모회사가 수령한 해당 배당금은 95%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음.

Keynote: 외국 자회사가 CFC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 한국 모회사가 해당 외국 자회사(특정외국법인)로부터 인식하는 모든 간주배당 및 실제 배당은 95%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시사함.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의 명확화

최근 유권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604)에 따르면,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세무당국이 세무목적상 발행한 공식적인 문서로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음.

Keynote: 납세자의 세무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를 확인하지 않는 문서는 거주자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외국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부터 한국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수자의 원천징수 의무

최근 유권해석(서면-2024-국제세원-3147)에서는 외국 파트너십(도관체^{1*})으로부터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파트너십 자체가 아닌 구성원(파트너)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였음. 이에 따라, 양수자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관련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귀속된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함. 특히, 외국 파트너십의 구성원 중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존재할 경우, 주식 양도로 발생한 한국 원천소득의 귀속자는 외국 파트너십이 아닌 해당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간주됨.

Keynote: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 파트너십의 구성원 중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한국 원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자체가 아닌 구성원(파트너)에게 귀속되므로 일반적인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함.

한국 모회사의 게임 개발비를 부담하고 수익배분 계약에 따라 일본 자회사가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의 소득 분류

최근 유권해석(서면-2024-법규국조-3613)은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인 한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원금 반환 의무 없는 게임개발비를 투자 받고 향후 해당 게임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익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3 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일본 자회사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의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음.

Keynote: 이와 같이 조세조약상 소득 분류는 경우에 따라 단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의 분류에 대한 양국 과세당국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경우,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¹ 소득은 해당 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파트너)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예를 들어, 법인격이 없는 케이만제도 유한책임 파트너십(Cayman Islands exempted limited partnership)의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투자 제안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 자산을 운용하며,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해외투자기구(Overseas Investment Vehicle)로 설립되며, 소득은 조합 자체가 아닌 개별 투자자인 구성원에게 직접 귀속된다.

원천징수세액이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e.g. 외국납부세액공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해석을 고려해볼 수 있음.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제출의무에 대한 명확화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 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더 이상 국가별보고서(CbCR)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서면-2024-법규국조-0247).

해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국내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arm's length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에 따라 외국법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아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 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례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정상가격
미만으로 주식을 양수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거나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따라서 ‘증여’라는 용어는 민법상
개념(즉, 대가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법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조심 2024 중 2296, 2025.03.11, 유사 결정례 2022 중 2748, 2024.10.31).

Keynote: 위 조세심판원의 해석은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증여 (즉, 한국 원천 기타소득)로 재분류
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소득은 본래의 성격인 국내 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형식보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한 대법원 판결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질 과세원칙에 따르면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 2023 두 378565, 2025.3.27 선고)에서는 위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 중개로 위장된 거래를 실질적으로는 토지 매매업으로 보아 재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납세자)는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음.

원고는 제 3자들과 부동산 중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실질적 의도는 중개가 아닌 농지를 직접 매입·매도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음.

첫째, 제 3자들이 해당 농지를 매입할 때 사용한 자금은 원고로부터의 대여금이었고,
둘째,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은 원고가 먼저 수령한 뒤, 토지 매매대금의 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서 제 3자에게 나머지 잔액을 송금하였으며,
셋째,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제 3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양도차익의 6% 수준에 불과하였음.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거래에 참여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거래를 원고가 직접 토지를 매입·매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였음.

Keynote: 본 사건은 대법원이 형식보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가장 거래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즉, 해당 거래가 가장 거래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행위나 거래가 강행규정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납세자가 특정한 형식 또는 구조를 채택한 것에 대해 사업상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근거로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음.

세무 신고 일정 안내

-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제출 사전통지서:** 2025 년 6 월 30 일까지 제출 (해당 사업연도가 12 월말 종료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제출)
 -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및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부가가치세 월별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2025 년 7 월 15 일까지 제출
 -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5 년 6 월 30 일까지 제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24 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

International Tax Team – Key Contacts

Oh, Sang Bum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Lee, Sung Wook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Cho, Sang Hyun	sanghyuncho@kr.kpmg.com	02-2112-7687
Suh, Yu Jin	yujinsuh@kr.kpmg.com	02-2112-0930
Song, Hyung Woo	hyungwoosong@kr.kpmg.com	02-2112-0275
Min, Woo Kee	wmin@kr.kpmg.com	02-2112-6886
Kang, Sung Won	kang22@kr.kpmg.com	02-2112-6771
Ryu, Su-Seok	suseokryu@kr.kpmg.com	02-2112-6787

home.kpmg/socialmedia



[Privacy](#) | [Leg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